

[미얀마]
산업안전보건
프로파일



미얀마 산업안전보건 프로파일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참여 접근법

미얀마 노동부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

서문

본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파일은 미얀마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와 활동에 관한 최신 연구 조사 보고서이다. 이 프로파일은 효과적이고 정합성 있는 안전 보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 기관 및 네트워크 역량 강화에 대한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다.

본 프로파일은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법률, 기술적 문제 등에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의 역할을 한다.
- 미얀마의 산업안전보건 계획을 국가 개발 전략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실행하기 위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낸다.
-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위한 기준 자료를 제공한다.

본 국가 프로파일은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여러 파트너들과의 협력과 협조를 통해 작성되었다. 특히 FGLLID(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와 관련 정부 기관 및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도움이 되었다.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은 예방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상호 조화로운 계획들을 바탕으로 한 예방 정책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업무상 질병, 부상, 사망, 기타 이에 수반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파일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모든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이다.

우리는 향후 필요한 업데이트나 보충 작업에 도움이 될 제안이나 평가를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FGLLID 기관장
(아웅산틴(Aung San T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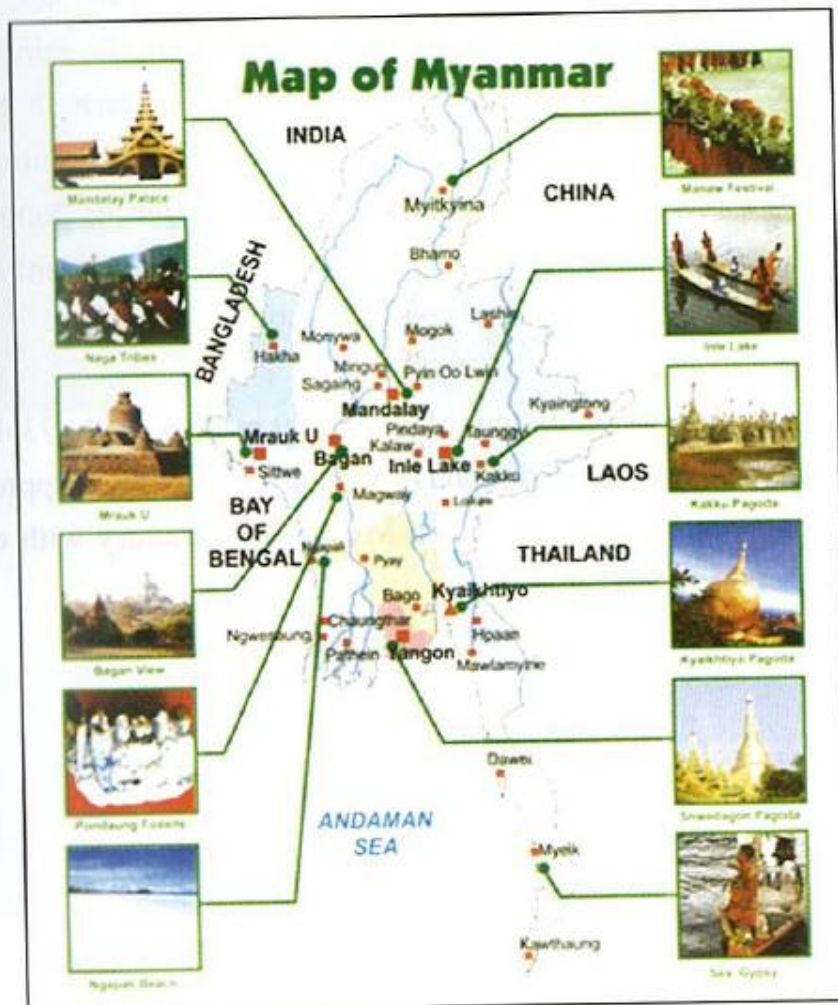
약자

ILO =	국제 노동 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MOL =	노동부(Ministry of Labour)
FGLLID =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Factories and General Labour Laws Inspection Department)
OHU =	산업 보건 기구(Occupational Health Unit)
IHL =	산업 위생 연구소(Industrial Hygiene Laboratory)
WSHA =	사업장안전보건법(Workplace Safety & Health Act)
OSH =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Safety & Health)
CIF =	선임공장감독관(Chief Inspector of Factory)
ASEAN-OSHNET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 산업 안전 보건 네트워크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 Nations - Occupational Safety & Health Network)
TCTP =	제 3국 훈련 프로그램(Third Country Training Programme)
NOSHC =	국가산업안전보건협의회(National Occupational Safety & Health Council)

목차

	서문	
	약자	
	미얀마 기초 정보	2
1장	1. 국제 산업안전보건 협력	3
	1.1 ILO와의 협력	4
	1.2 ASEAN-OSHNET과의 협력	4
	1.3 국가 산업안전보건 정책	5
2장	2. 산업안전보건 조직	7
	2.1 광업부	8
	2.2 보건부 산업보건기구	8
	2.3 보일러감독청	9
	2.4 보일러 제조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문서	10
	2.5 제조업체 직인	10
	2.6 산업부 전기감독청	10
	2.7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FGLLID)	11
	2.8 1951 공장법의 산업안전보건 규정	12
	2.9 안전 규정	12
	2.10 보건 규정	13
	2.11 복지 규정	14
3장	3.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15
	3.1 FGLLID의 배경	16
	3.2 조직	16
	3.3 공장감독관의 의무	17
	3.4 감독 대상 공장의 범위	18
	3.5 법률 및 규칙의 집행	20
4장	4. 산업 사고 및 업무상 질병의 신고, 분류, 기록 유지	21
	4.1 사고	22
	4.2 부상 및 질병, 보상 대상 질병	23

5장	5. 산업안전보건 교육 훈련	25
	5.1 산업안전보건 훈련	26
	5.2 해외 훈련	28
	5.3 교육 활동	28
6장	6. 환경 개선 활동	29
	6.1 근로 환경 개선 대책	30
	6.2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32
	6.3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 조치	41
	6.4 화학적 위험	43
	6.5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국가적 대응	44
7장	7. 새롭게 부각되는 산업안전보건 활동	45
	7.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46
	7.2 국가산업안전보건협의회	46
8장	8. 향후 과제	47
	부록 I - 미얀마가 비준한 ILO 협약 및 그 국내 적용을 위한 국내법	49
	부록 II - 영구적인 부분 노동불능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부상 목록	51
	부록 III - 업무상 질병 목록	52



미얀마 기초 정보

미얀마 연방은 남북으로 2051km 동서로 936km에 달하는 면적을 점하고 있는 동남아 대륙 지역에서 가장 큰 국가이다. 총 국토 면적은 676,577km²이고 해안선 총길어도 2800km가 넘는다.

미얀마 연방은 북쪽에서 북동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동쪽에서 동남쪽으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타이왕국, 남쪽으로 안다만해와 벵갈만, 서쪽으로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인도공화국과 접하고 있다.

미얀마는 아시아 몬순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크게 나누면 여름, 우기, 겨울의 세 계절을 가지고 있다. 3월부터 5월 중순까지는 더운 시기이며 5월 중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이어진다. 11월부터 추위가 시작 되서 2월 말까지 낮은 온도가 유지된다. 그러나 지형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후 조건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미얀마 중부 지방의 연강수량은 1000mm 이하지만 라카인(Rakhine) 해안 지역의 연강수량은 5000mm가 넘는다.

미얀마의 인구는 약 5900만 명이며 73.4%가 시골이나 격오지에 거주한다. 연 인구 성장률은 약 2.02%며, 100개가 넘는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을 만큼 인종 다양성이 큰 국가이다.

1장

산업안전보건 국제협력

1.1 ILO와의 협력

안전하고 건강하며 수준 높은 근로 조건과 환경을 촉진하는 것은 1919년 창설 이래 계속 유지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활동 목표이다. 미얀마는 독립 후 1948년 5월 18일 ILO에 가입했다. 미얀마는 ILO 회원국으로써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ILO 활동에 참여했다. 정부, 사용자, 근로자 대표자와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삼자주의 대표단이 매년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다. 미얀마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ILO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다. 미얀마는 21개의 ILO 협약을 비준했으나 그 중 두 개의 협약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철회했다. 현재까지 미얀마는 총 19개의 협약을 비준했으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미얀마가 비준한 ILO 협약과 그에 따라 시행한 조치들은 부록 I에 수록되어 있다.

1.2 ASEAN-OSHNET과의 협력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지역 네트워크인 ASEAN-OSHNET(동남아시아국가연합-산업안전보건네트워크(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 Nations - Occupational Safety & Health Network, ASEAN-OSHNET))는 1976년 시작된 ILO 근로 조건 및 환경 개선 프로그램(PIACT)의 일환으로 창설되었다.

이 네트워크는 ASEAN 리더들이 발표한 비전 2020의 “돌보는 사회들의 공동체(Community of Caring Societies)”를 통해 선언한 가치와 목표를 강화하고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미얀마는 2000년 8월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 기관장이 ASEAN-OSHNET 가입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ASEAN-OSHNET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미얀마는 ASEAN-OSHNET에 가입한 후 관련 부처 책임자가 ASEAN-OSHNET 운영 위원회 회의에 매년 참여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얀마는 2006년에 제 7차 ASEAN-OSHNET 운영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는 분야별로 지정된 국가가 그 운영을 주도하는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분야별 지정 국가는 다음과 같다:

- 태국은 정보
- 훈련은 필리핀
- 기준은 말레이시아
- 연구는 인도네시아
- 감독은 싱가포르
- 산업안전보건 체계는 베트남



제 7차 ASEAN-OSHNET 운영 위원회 개최 기념식
미얀마 양곤, 2006

1.3 국가 산업안전보건 정책

미얀마 기본 헌법 2008 24조를 보면 “미얀마 연방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 누려야할 수준 높은 근로 및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수준 높은 근로는 인간성에 부합되면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준 높은 근로는 단순히 사고나 업무상 질병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물리적, 정신적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미얀마의 국가 12대 과제 중 하나가 “국가 전체의 보건, 건강, 교육 기준을 향상시킨다”이다.

공공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 법(1964) 2장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를 위한 보건, 안전, 복지, 응급처치, 소화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미얀마 정부는 국가 발전에 산업안전보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미얀마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지원과 협력 하에 새로운 산업과 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공업과 건축업 부문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국제기구와 외국 전문가로부터 외국 전문가 초빙, 국내 인력을 위한 기술 훈련, 장비 지원 등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장 산업안전보건 조직

2. 산업안전보건 조직

여러 정부 부처들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보호와 근로 조건 향상을 책임지고 있다. 주요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 (a) 노동부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Factories and General Labour Laws Inspection Department, FGLLID)
- (b) 산업부 산업감시감독과 보일러전기감독분과
- (c) 광업부 기획감독과
- (d) 보건부 보건과 산하 산업보건기구
- (e) 건설부
- (f) 양곤도시개발위원회(YCDC)
- (g) 농업개간부 미얀마농업서비스

2.1 광업부

미얀마 정부는 1994년 기존 법을 대체하는 미얀마 광업법을 발표했다. 이 법의 집행은 광업부 기획감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법에는 보건, 위생, 안전, 사고 예방 관련 감독 업무, 광산 근로자 및 관련 인원들의 복지, 규율 등이 규정되어 있다.

2.2 보건부 산업보건기구

미얀마 의료 서비스의 목적은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산업보건기구는 1971년 보건과 공중보건분과 산하에 설립되었다. 산업보건기구의 역할과 기능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질병, 부상,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여러 부문(시골 농업 지역사회 포함)의 근로자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산업보건기구는 경제적 필요와 상황에 따라, 근로자 및 근로 환경에 대한 감독, 사용자를 위한 산업 보건 관련 정보, 교육, 훈련, 실무 서비스, 근로자 응급처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보건기구는 공기, 물 오염, 독성 및 유해 폐기물 및 화학 물질과 같은 환경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 보건 위험을 해결하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으로 인한 보건 위험에 대해 진단하고, 진단된 위험에 대해 근로자, 사용자, 일반 대중과 균형 잡힌 소통을 하고, 예방 전략을 홍보하는 것도 이제 산업보건기구의 역할이다. 근로자 보건에 대한 관심은 공장 문 앞에서 멈추면 안 된다. 이 문제는 이제 근로자의 가정, 지역사회 나아가서 국가 전체로 까지 확장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업장 안팎에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산업보건기구의 목표 중 하나이다.

현재 산업보건기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1) 환경 보건 위험
- (2) 산업보건
- (3) 건강한 도시(만달레이(Mandalay))

산업보건기구는 근로자 보건을 포함한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예방대책 홍보, 건강한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사회 역량 육성, 환경 관련 질병의 보건에 대한 영향, 위험 평가, 역학조사 등과 같은 업무를 프로젝트 행동 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2.3 보일러감독청

미얀마 연방 정부는 1990년 보일러 법을 발표하고 이 법을 집행할 권한을 산업부 미얀마 산업감시감독 보일러감독청에 부여했다.

보일러감독청의 주요 기능은 안전한 보일러 사용을 위해 보일러 법에 규정된 보일러들을 매년 감독하고 사용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다. 보일러감독청은 보일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일러의 설계, 설치, 제조업체, 상호연결, 수입, ISO, BS, JIS 등 각종 관련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관리한다.

보일러감독청이 허가한 산업 표준 또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a) ISO R.831
- (b) B.S.(영국 표준) 2790
- (c)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 (d) J.I.S(일본 산업 표준) B 8201
- (e) DIN/TRD(DIN 스팀 보일러 기술 규칙)
- (f) S.A.A(오스트레일리아 표준)
- (g) 인도 보일러 규칙(IBR)

2.4 보일러 제조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문서

외국에서 수입된 모든 신상품 보일러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a) 감독기관의 설치 중 감독인증서
- (b) 설치업자의 제조업체 및 검사 인증서
- (c) 종단면의 모든 주요 치수, 단면도, 일련번호, 제조업체의 공식 직인이 포함된 도면. 도면은 대형 보일러의 경우 1:20 스케일 이상, 소형 보일러의 경우 1:10 스케일 이상으로 작성해야 한다. 도면에는 종단면과 원주 이음매의 세부적인 형태, 여러 스테이 및 지지대도 포함되어야 한다.
- (d) 용접 및 이음매 없는 단조로 제작된 드럼의 경우, 화학 분석, 인장 시험, 휨시험, 아아이조드(Izod) 충격시험, 방사능 검사, 열처리 검사 결과가 포함된 제조업체의 인증서

2.5 제조업체 직인

모든 보일러는 앞 뒤 판에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인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 (a) 제조업체명
- (b) 제조업체 일련 번호
- (c) 제조국가
- (d) 설계 게이지 압력
- (e) 제조연도
- (f) 감독기관 직인

2.6 산업부 전기감독청

탐사, 발전, 송전, 배전, 기타 전기 사용 관련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84년 전기법이 제정되었다. 산업부는 1985년 7월 1일 전기법 시행규칙 63/85를 발표했다.

2.7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

(Factories and General Labour Laws Inspection Department, FGLLID)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활동을 하는 정부 기관은 많이 있지만 관련 업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에 있다. 미얀마 정부는 근로자들이 노동 관계 법률에 명시된 법적 권리를 항시적으로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안전, 보건, 복지 관련 법률 집행을 집행할 책임을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에 부여하고 있다.

FGLLID의 목적

근로자들이 노동 관계 법률에 명시된 법적 권리를 항시적으로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FGLLID의 주요 기능은 노동법을 집행하고 산업안전보건 훈련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FGLLID의 기능

- 노동법 집행
- 산업안전보건 훈련 및 자문 서비스 제공

FGLLID가 집행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 공장법 1951
- 유전(노동 및 복지)법
- 공장(응급조치) 지침
- 상가 및 시설물 법
- 휴직 및 휴가 법
- 임금법
- 쟁의행위로 인해 지연된 근로자 현금 지급에 대한 배상에 관한 규칙
- 정미업 최저임금 명령

- 담배 및 껌 산업 최저임금 명령

FGLLID가 집행하는 주요 규칙은 다음과 같다

- 위험 산업(납) 규칙
- 위험 산업(탄산수) 규칙
- 위험 산업(셀룰로오스 도포) 규칙
- 위험 산업(샌드 블래스팅) 규칙
- 위험 산업(크롬) 규칙
- 위험 산업(고무) 규칙
- 위험 산업(기타) 규칙

2.8 1951 공장법의 산업안전보건 규정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1951 공장법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2.9 안전 규정

다음 규정들은 근로자를 위한 안전 규정들이다.

- 움직이는 기계의 위험한 부분에 펜스를 설치한다.
- 여성 또는 아동은 기계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 윤활, 조정 작업을 할 수 없다.
- 청소년은 충분한 훈련 없이는 어떠한 기계 사용 업무도 할 수 없으며,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
- 전원 차단을 위한 적절한 타격 장치 또는 기타 효과적인 기계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회전 샤프트, 축, 바퀴, 피니언 톱니바퀴의 스크류, 볼트, 키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매립되어 있거나, 커버가 씌워져 있거나 막혀 있어야 한다.
- 솜풀기기를 운영 중인 공장에서는 여성이나 아동을 고용할 수 없다.
- 모든 권양기, 리프트, 크레인, 기타 유사한 기계들은 적절한 소재와 강도를 가져야 하며, 기준에 따라 제대로 된 설치하고 적절한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
- 근로자를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10 보건 규정

- 공장은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한다.
- 폐기물 및 배출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 작업실에는 충분한 환기가 이뤄져야 한다.
- 분진, 매연 등을 흡입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기준에 맞는 습도를 유지해야 하며 사용한 물은 정수해야 한다.
- 공장 안에 어떤 공간도 과밀 되서는 안 된다.
- 충분하고 적절한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 깨끗한 음용수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 화장실을 제공해야 한다.
- 침 뺏는 그릇을 제공해야 한다.
-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 및 시설은 상온 이상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안전 작동 강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모든 바닥, 계단, 복도, 통로는 안전하게 건설된 것이어야 하며 적절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 모든 용기, 기름통(ump), 탱크, 피트, 바닥에 뚫린 구멍이나 웅덩이는 확실하게 덮어 두거나 튼튼한 펜스를 쳐야 한다.
- 여성, 청소년, 아동은 무거운 짐을 들 수 없으며 성인도 160 파운드 또는 44 비스(역주: 미얀마 고유 도량형. 1비스는 약 1.63kg)를 초과하는 짐을 들거나 옮길 수 없다.
- 비산하는 파편이나 입자 또는 과도한 빛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눈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구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충분한 사이즈의 맨홀이나 기타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는 챔버, 탱크, 통, 파이프, 연통, 기타 밀폐된 공간에 들어갈 수 없다.
- 모든 공장에는 대피 수단과 소화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2.11 복지 규정

- 충분하고 적합한 세면 시설
- 앉아서 설 수 있는 공간
- 구급 박스 또는 진료소(2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구내식당(2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충분하고 적합한 휴식 시설, 화장실, 식당(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6세 이하 아동을 위한 탁아소(여성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3장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3.1 FGLLID의 배경

1912년 7월 1일 공장법 1911(인도법(역주:당시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제국의 일개 주로 전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도제국법이 미얀마에도 적용되었다))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총무처 산하에 단 한명의 공장감독관이 임명되었다. 1920년에 공장감독 부서가 설립되었으나 그 구성은 한명의 선임 공장감독관과 한명의 공장감독관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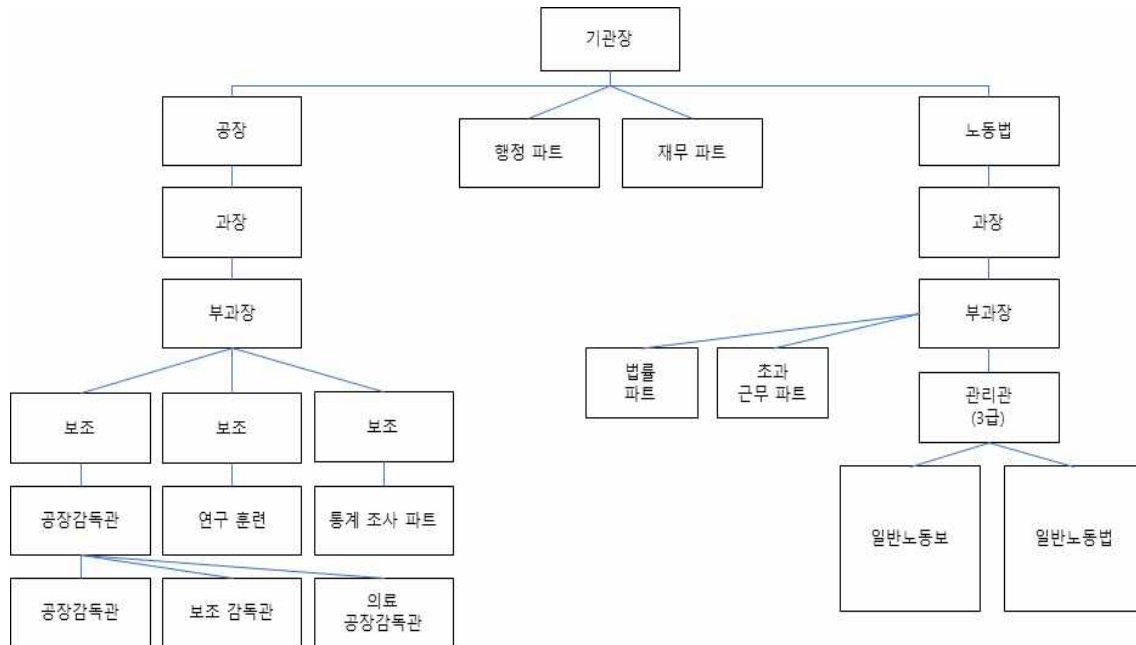
공장법 1911(인도법)은 1934년에 개정되었으며 1937년 공장감독 부서가 폭발물 및 광산감독과 산하로 들어갔다. 그리고 독립 이후 기존 공장법이 미얀마 사정에 맞게 개정되어 공장법 1951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행정 체계에 따라 부서의 이름도 현재 명칭인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FGLLID)로 변경되었다.

3.2 조직

FGLLID의 기관장은 선임공장감독관 직을 겸한다. 기관장 아래 공장감독분과와 일반노동법감사분과의 두 개 분과가 있다. 각 분과마다 따로 과장을 두고 있다. 현재 공장감독분과에는 1명의 의료공장감독관을 포함한 11명의 공장감독관과 7명의 공장감독관보가 근무하고 있으며, 36명의 일반노동법감독관과 22명의 일반노동법감독관보가 일반노동법감독분과에 근무하고 있다. 모든 공장감독관 및 일반노동법감독관은 각자의 관할 지역을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보다 기능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장 감독부, 연구 훈련 부문, 통계 조사 부문에 각각 과장보를 두고 있다.

FGLLID 조직도



3.3 공장감독관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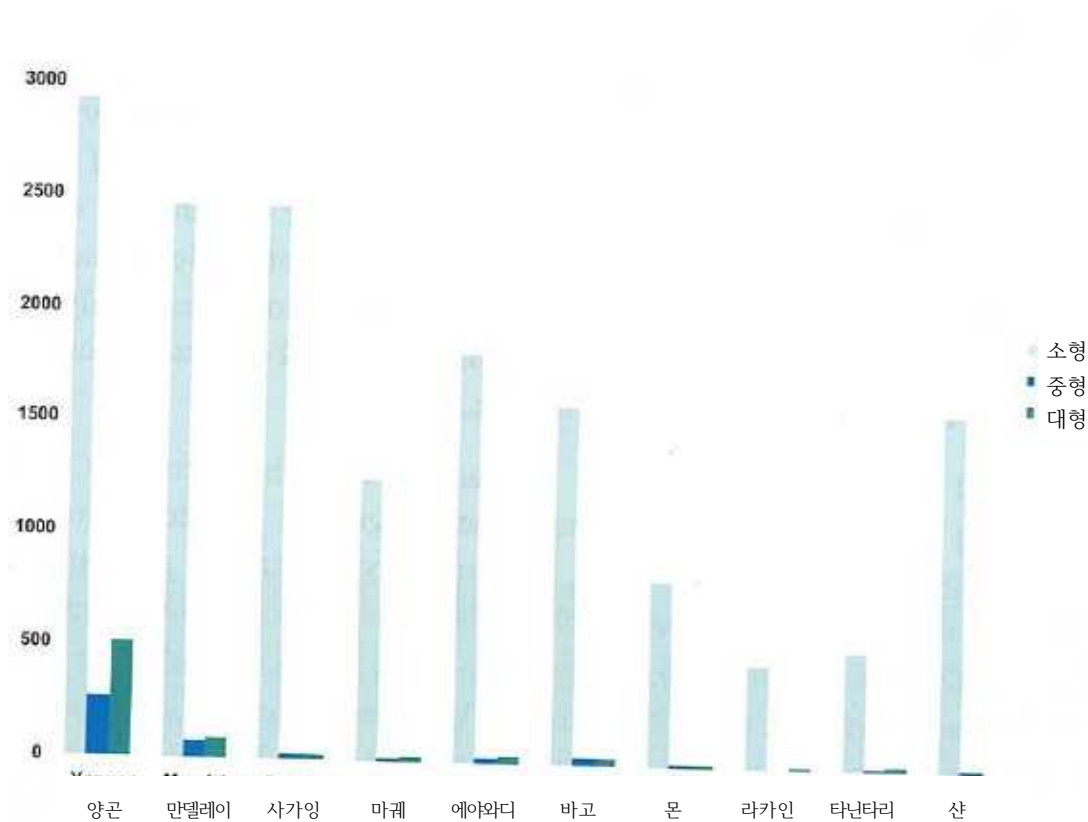
- 공장 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 정기적으로 공장 및 유전을 감독하며 지침,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경고 또는 기소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다.
 - 사고, 업무상 질병, 기타 위험한 사건에 대해 조사한다.
 - 사고 및 업무상 질병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통계를 작성한다.
 - 필요한 경우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장비를 사용하여 위험 진단 및 관리와 같은 사업장 집단조사를 실시한다.
 -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전반과 특히 근로 환경 감시와 관련된 기술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용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3.4 감독 대상 공장의 범위

공장법에 따르면 공장이란 10인 이상이 근무하며 생산 공정이 진행되는 모든 구역 또는 시설이다. 10인 이상 20인 미만일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만 공장으로 인정되며, 20인 이상일 경우 전기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공장으로 인정된다. 100인 이상이 근무할 경우 상점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활자 인쇄, 착유, 자동차 수리, 자동차 수리, 자동차 도색 작업장의 경우 1명 이상만 근무하고 있으면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441,594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17,100개의 공장이 공장법의 적용 대상이다. 그중 16,342 곳의 공장이 중소기업 공장이다.

공장의 숫자와 위치는 다음과 같다.



	성(Division)/주(State)	공장 규모			
		소형	중형	대형	합계
1	양곤	2920	272	514	3706
2	만델레이	2455	71	84	2610
3	사가잉	2454	22	23	2499
4	마궤	1245	15	23	1283
5	에야와디	1818	24	28	1870
6	바고	1594	36	35	1665
7	몬	819	16	11	846
8	라카인	459	4	12	475
9	타닌타리	518	14	18	550
10	산	1577	9	10	1596
	합계	15859	483	758	17100

3.5 법률 및 규칙의 집행

법률 및 규칙의 집행은 산업안전보건 국가 정책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공장감독관의 역할은 근로 조건과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령의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안전, 보건, 복지, 기타 관련 문제에 관한 각종 법령의 규정들 중 공장감독관이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모든 규정의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 미얀마 정부는 공장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공장감독관은 일반 공장 감독 업무와 산업사고 및 위험 사건 조사라는 두 가지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감독관들은 각자의 관할 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분기마다 진행되는 정기 감독 프로그램에 따라 공장과 사업장에 대한 정기 감독을 실시한다. 각각의 감독관은 월 최저 20 곳, 연 최저 240 곳의 공장 또는 사업장을 감독해야 한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감독관의 관할 지역에 따라 배정된다. 매 회계연도 마다 약 2000 곳의 공장이 산업안전보건 및 복지 감독을 받으며, 고위험 산업과 산업사고의 빈도와 강도가 높은 산업은 우선적인 감독 대상이 된다. 또한 산업사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권고하는 것도 공장감독관의 책임이다.

4장

산업 사고 및 업무상 질병의 신고, 분류, 기록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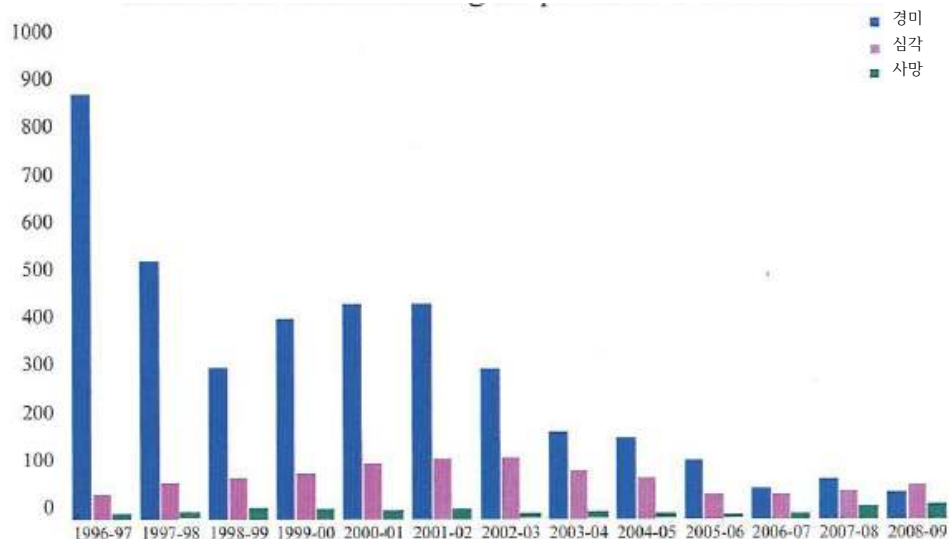
4.1 사고

사고란 계획이나 예상과 다르게 발생하여 사람의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저해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재물에 손상을 끼치는 일을 의미한다. 사고 시 피해자의 신체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다른 물체, 사람, 물질과 접촉하거나 그에 노출되게 되며, 사람의 움직임이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산업사고의 피해자인 근로자는 사고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며, 단기 또는 장기간에 걸쳐서 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된다. 사용자 역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보상비, 사고처리비, 유급병가 지급금 등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며, 사고가 잦고 정도가 심할 경우 근로 인시(人時)의 손해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사고를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 사고 예방 활동과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가 유용하게 사용된다. 통계를 통해 사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통계가 없다면 관련 대책을 세우거나 평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사고 신고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장법 1951 53절에 의하면 관리자나 사용자는 공장 안팎에서 사망이나 신체 손상을 동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 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 단, 건축 사고나 통근 중 사고는 제외된다. FGLLID는 신고된 사고를 원인, 분야, 부상 부위에 따라 분류한다.

1996~2009년 사이의 사고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	사고			합계
		경미	심각	사망	
1	1996-97	897	57	16	970
2	1997-98	547	81	12	640
3	1998-99	324	90	27	441
4	1999-00	426	100	24	550
5	2000-01	458	120	22	600
6	2001-02	455	130	25	610
7	2002-03	320	135	10	465
8	2003-04	187	107	13	307
9	2004-05	175	91	10	276
10	2005-06	126	57	7	190
11	2006-07	69	56	17	142
12	2007-08	88	63	32	183
13	2008-09	59	75	34	168
14	2009-10	1	36	28	65

공장법 54절에 따르면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근로자보상법 목록표 III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을 반드시 FGLLID와 공장이 위치한 지역 내의 의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목록표 III의 업무상 질병은 부록 II에 수록했다.

4.2 부상 및 질병. 보상 대상 질병

부상 및 질병 보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나는 고용으로 인해 또는 고용 중에 발생한 부상을 보장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보상법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으로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이다.

사회보장법 1954는 사용자가 부상당한 근로자를 위한 부담금을 납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사고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상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일시노동불능 상태일 경우, 근로자가 해당 부상에서 회복하거나 사고 후 52주가 지나 지급 시한이 도래할 때까지 일시노동불능 보험금을 지불한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부분 노동불능(영구적인 부분 장애) 또는 영구적인 완전 노동불능(영구적인 완전 장애)를 입은 근로자 중 보장 대상인 근로자에게는 영구 장애 연금을 지급한다. 사회보장의료진단위원회에서 노동불능 정도를 결정한다. 영구 완전 노동불능 연금은 보장 대상 임금의 약 66.67%이다.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연금 총액의 25%를 가산해야 한다.

보험 가입 근로자가 산업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연금을 배우자(또는 배우자들)가 사망하거나 재혼할 때까지 지급한다. 자녀들은 13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계속 이어나갈 경우 자격 연령이 16세까지로 연장된다. 미망인이나 자녀가 없을 경우 존속, 비속, 방계 피부양 친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산업 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가 여성일 경우, 배우자가 노동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가족 연금의 총액수는 보장 대상 임금의 약 66.67%이다.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보상법 1923에서 보상 의무를 개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 사고로 인한 근로자 개인의 부상과 업무상 질병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영구적인 부분노동불능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부상의 목록은 부록 II에 수록했다.

5장 산업안전보건 교육 훈련

5.1 산업안전보건 훈련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은 직접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과 근로 환경 문제는 기술자, 관리자, 감독관, 근로자는 물론 학생, 일반 대중 등 모든 대상을 상대로 한 교육 훈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미얀마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는 방식으로 교육, 훈련,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식과 원칙들을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조기에 관련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인식 제고와 관련 법령 준수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훈련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근로 환경이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한다는 것이고 둘째, 그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근로 환경은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위험 감소 전략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계속해서 새롭게 전파해야 한다. 새로운 위험을 발견하고 평가해야만 규제, 예방, 보호 대책과 기술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FGLLID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교육 훈련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FGLLID의 주요 훈련 활동은 다음과 같다:

- (a) 여러 산업의 안전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 프로그램
- (b) 사내 훈련 과정에서 안전보건 관련 주제에 대한 교육
- (c) 다른 정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관리관 훈련 과정에서 안전보건 관련 주제에 대한 교육
- (d) 개별 기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감독관, 근로자에 대한 훈련

FGLLID는 기업의 근로자, 감독관, 안전담당관 뿐만 아니라 FGLLID 자체 직원에 대해서도 근로 조건, 특히 산업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선진 기술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FGLLID가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 훈련 과정은, 제재소, 기계공업, 화학 산업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34개의 훈련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여러 기업에서 참가한 4393명의 관련 인원들이 훈련을 이수했다.

FGLLID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훈련(2004-2009)

	연도	훈련 횟수	참가자 수
1	2004	16	650
2	2005	7	397
3	2006	30	1022
4	2007	30	1010
5	2008	31	1025
6	2009	34	1336



산업안전보건 사내 교육 현장



5.2 해외 훈련

FGLLID는 다양한 민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인식 제고, 지식 및 기술 전달, 태도 변화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장감독관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새로운 공정을 익히고 그로 인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 훈련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ASEAN 회원국들이 후원하고 있다.

훈련 개회식 연설

미얀마 정부는 J-SEAM(남남 협력을 위한 일본-동남아 회의, Japna-Southeast Asian Meeting for South-South Cooperation)과 같은 기제를 적용한 제3국훈련 프로그램(TCTP)을 필리핀에 제안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부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FGLLID)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위험 평가 및 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며, TCTP 방식의 3개년(일본회계년도 2009-2011) 특별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이다. 이 훈련 과정의 목적은 FGLLID의 핵심 산업 위생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해외 훈련 현장 방문 단체 사진

5.3 교육 활동

교육 활동은 다음과 같다:

- (a) 안전 포스터, 책자, 팜플렛 배포
- (b) 기존 노동 법령에 대한 대화 및 토의

6장 환경 개선 활동

6.1 근로 환경 개선 대책

근로 보호는 위험하거나 해로운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지 수준을 높여주는 근로 조건을 조성하고 개선해가는 것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동안 근로 보호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위험하거나 해로운 요소들을 근로 환경에서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점점 관심의 초점이 최저 수준 유지를 넘어서서 근로 환경 개선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

노동은 근로자 개인의 생계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투입해야 하는 대상이다. 근로자는 노동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집단이나 조직의 구성원이 된다. 노동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자존감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로 환경 측정



소음계를 이용한 측정

근로 보호의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 환경’은 단순히 사업장의 물리적인 근로 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 물리적, 정신적으로 반응하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된 넓은 개념이다.

여기에는 업무 공정의 배치, 근로 시간 등과 같은 요인들도 포함된다. 근로 보호 대책뿐만 아니라 인력 관리 정책, 근로 조직, 업무 공정 배치, 사업장 내 업무 협동, 사업장의 위치 등도 근로 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근로 환경 개선은, 사업장 안팎에서 산업 사고와 업무상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나아가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로 환경 측정

근로 환경 개선 대책은 환경 요소와 의료 검진 요소를 통해 시행된다.

근로 환경 요인은 다음과 같다:

- a) 극단적인 온도, 소음, 진동, 불충분한 조명,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기압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
- b) 액체, 고체, 분진, 연기, 증기, 가스 등과 관련된 화학적 환경
- c)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성 폐기물, 기생충과 같은 생물학적 환경
- d) 잘못 설계된 기계, 장비, 도구, 부적절한 좌석 및 작업장 설계,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과 같은 인간공학적 원칙에 위배되는 환경
- e) 환경 요인으로 인해 신진대사와 심리적 조건에 영향을 받으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노동 생산성과 사회적 복지 수준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근로 환경 개선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위험 파악
- 2. 위험 정도 평가
- 3. 적절한 수단을 통한 관리

미얀마에서 근로 환경 개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FGLLID는 UNDP의 재정적 지원과 ILO 및 기타 관련 기구들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산업위생연구소를 설립한 바 있다.

소음, 열악한 환기, 열 스트레스, 적절하지 않고 부족한 조명, 유해 분진, 연기, 가스 노출 등과 같은 극단적인 근로 환경에 대한 측정 및 평가가 우선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를 채택된 기준과 비교한 다음 적시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FGLLID 직원들이 근로 환경 측정 작업을 수시로 행하고 있다.

산업위생연구소는 8 miles, Pyay Road, Mayangone Township, 양곤, 미얀마에 위치해 있다. 산업위생연구소의 활용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기술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부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Factories and General Labour Laws Inspection Department, FGLLID)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위험 평가 및 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리핀 산업안전보건 훈련 센터에서 2009년에 실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국제협력기구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10명의 노동부 직원이 참가했다.



필리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참가

6.2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현재 미얀마 노동법에는 기업의 안전위원회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FGLLID의 노력으로 여러 대형 사업장들에 “안전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었다. 1981년 이래로 현재까지 1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위험 사업장 447

곳(대부분 공공 조직)에서 안전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설치되었다. 사망 사고나 그에 준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던 공장은 산업안전보건 관리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사용자는 자사의 업무 성격과 생산 목표에 따라 업무 활동을 조직한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 조건과 안전 보건 수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며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사고, 업무상 질병, 기타 위험한 작업이 없는 안전한 생산 공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얀마의 공장 사용자들은 기존의 법률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안전 정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가 플랫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



믹서기에 설치된 알람



기계 가동 및 배치 관련 안전 조치



위험한 작업장이나 작업 공정 중 제공된 개인안전장비 착용

화학물질 취급 주의 사항 및 응급 대처 요령

CAUTION / PREVENTION		EMERGENCY RESPONSE	
	Flammable DANGER - Keep away from heat, hot surfaces, sparks, open flames, and other sources of ignition. - Keep container tightly closed when not in use. - Handle with care. - Do not use open flame.	비폭발성	FIRE FIGHTING MEASURE FOAM TYPE 비산물 사용 가능 
	Corrosive DANGER - Wear eye protection. - Wear gloves. - Wear protective clothing. - Wash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응급 Wire Short 회로	POWDER TYPE 비산물 사용 가능 
	Hazardous for the Environment DANGER - Wear eye protection. - Wear gloves. - Wash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유리용기 파손 유출액: 흡수 / 청소 오염	ACCIDENTAL RELEASE MEASURE EYE WASH 사용 가능 
	Toxic DANGER - Wear eye protection. - Wear gloves. - Wash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유리용기 파손 유출액: 흡수 / 청소 오염	SHOWER 사용 가능 
	Explosive DANGER - Wear eye protection. - Wear gloves. - Wash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DRUM HANDLING 유리용기 파손	Safety shoes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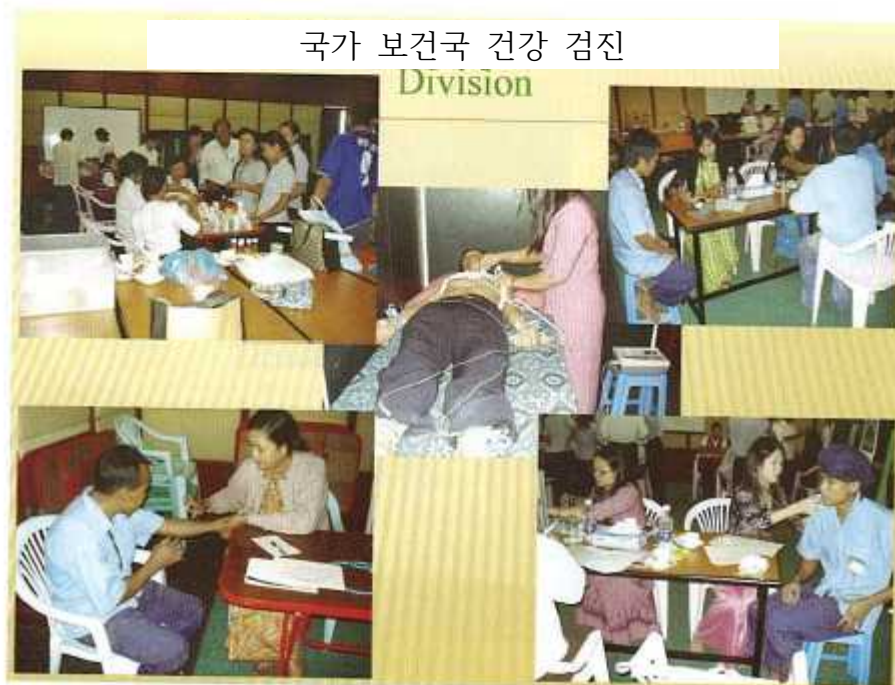
2개 국어로 된 화학물질 취급 주의 사항 및 응급 대처 요령



유해 액체가 들어 있는 드럼통 보관



응급 상황 대처 시설



공장 근로자 대상 건강 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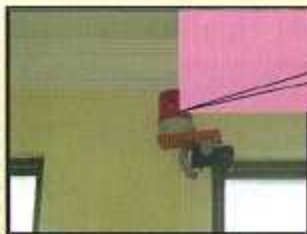
유해 폐기물



지정된 쓰레기 매립지에서 처리되는 산업유해폐기물

화재 경보기

자동 화재
스프링클러



공장 부지에 설치된 소화전 및 소방 호스

화재 예방 및 소방 대책



어느 기업에 설치된 무사고 현황판





FGLLID와의 협력 하에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 훈련



어느 공장의 정보 센터

6.3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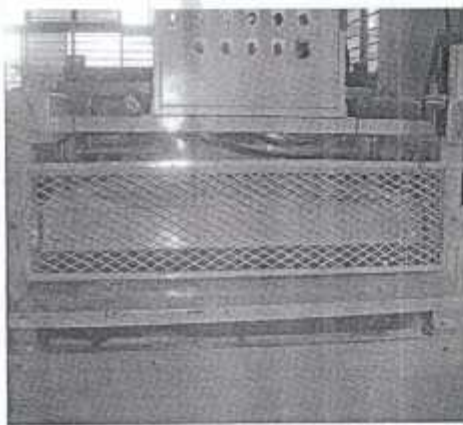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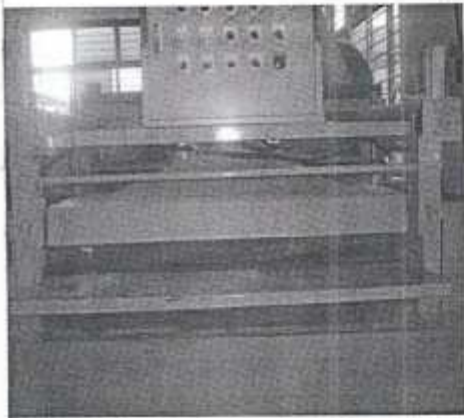
공장법 1951 42절은 공장 내의 모든 건물, 통로, 기계류, 설비가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감독관은 수리나 시정조치가 있을 때까지 그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장에서 사망이나 그에 준하는 위험한 상황을 동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FGLLID 기관장(즉 선임공장감독관) 또는 기관장이 지정한 공장감독관이 그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조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 해당 공장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공장감독관에게 통보하면 공장감독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면 시설 재가동 허가를 할 수 있다.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모든 수준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前 : 덮개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後 : 덮개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前 : 위험한 기계 작동 환경(1,2,3)
後: 지침에 따른 안전 조치 시행(4,5)

6.4 화학적 위험

지난 10년간 화학물질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 화학물질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수많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은 정부, 사용자, 근로자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 노동 컨퍼런스는 1990년 6월, 업무 현장에서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부상 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 협약(170호)과 권고(177호)를 채택했다.

살충제, PCB, 다이옥신과 같이 화학물질 중 상당수가 급성 또는 만성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특히 농업이나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근로자들이 살충제와 같은 화학물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근로자와 관리자들이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대처한다면 화학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부상 또는 사망 사건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고 해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화학물질은 농약과 비료, 화학 서비스 제공자, 산업용 가스, 무기 화학물질, 유기화학 물질, 계명활성제, 석유화학, 석유, 플라스틱, 특수 화학물질, 표면 코팅제 등 10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화학제품은 약품, 화장품, 비누, 세제, 페인트, 잉크, 고무, 알코올 음료 등과 같은 소비재로 분류할 수 있다. 화학제품은 농업, 광산업, 제조업, 전기, 건축, 금속, 공학, 포장, 의료, 섬유, 식품 가공 등 수 많은 분야에서 원자재로 사용된다.

화학물질은 분명히 인류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그만큼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 사용자, 소비자 모두 충분한 경각심과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화학물질은 항상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화학물질의 편리한 사용과 안전한 관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모든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자, 사용자, 기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훈련, 홍보 캠페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6.5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국가적 대응

미얀마의 화학물질 관리 전략은 국가 개발 계획과 연계된 화학물질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수립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해 화학물질 분류, 라벨링, 포장 국제 기준에 대한 ASEAN의 지침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러 정부 부처의 대표자들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학물질안전법 입안 위원회를 설립하여 화학물질안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와 토의를 통해 종합적인 법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화학물질안전법 초안을 발표한 상태이며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안은 최종 의결과 발효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7장

새롭게 부각되는 산업안전보건 활동

7.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미얀마의 기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규칙, 규정들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험이 많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FGLLID에서는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7.2 국가산업안전보건협의회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략, 기준, 활동,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근로자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얀마 연방 정부는 국가산업안전보건협의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삼자주의 접근법에 따라 정부, 관련 당사자들, 근로자의 대표로 구성되며, 산업안전보건 홍보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감독 및 집행 프로그램, 각종 관련 기준의 개발이 그 주요 기능이 될 것이다.

8장 향후 과제

8. 향후 과제

미얀마에 시장 중심 경제가 도입된 이후 민간 경제 부문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거듭했다. 민간 경제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기업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산업위험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같이 커졌다. FGLLID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향후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근로 조건, 특히 산업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선진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FGLLID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을 실시한다.
- ❖ FGLLID 산하 산업위생연구소의 규모를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 ❖ 중소기업의 근로 조건, 근로자 복지, 산업안전보건, 생산성 향상을 위한 FGLLID의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 ❖ FGLLID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센터(OSHC)”를 설립하여 근로자, 감독관, 안전 담당관, 사내 안전보건 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보건 관련 훈련을 실시한다.
- ❖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획, 평가, ASEAN 국가들과의 정보 교환 등을 위한 FGLLID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통계 정보 기구를 설립한다.
- ❖ 국내외 기관들로부터 FGLLID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 ❖ 외국 정부 및 기관들과의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관한 기술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 ❖ 국가 단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NOSHC)를 설립한다.
- ❖ 기존의 공장법 1951을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에 맞게 개정한다.

부록 I

미얀마가 비준한 ILO 협약 및 그 국내 적용을 위한 국내법

	ILO 협약	시행 중인 법령
1	협약 1호, 근로시간(공업), 1919	공장법 1951, 광산법 1923, 유전(근로 및 복지)법 1951
2	협약 2호, 실업, 1919	행정명령으로 설립된 공공직업 소개소, 고용및훈련법 1951
3	협약 6호, 야근(청소년), 1919	공장법 1951, 광산법 1923, 유전(근로 및 복지)법 1951
4	협약 11호, 조합권(농업), 1921	노조법, 1926
5	협약 14호, 주휴(공업), 1921	공장법 1951, 광산법 1923, 유전(근로 및 복지)법 1951
6	협약 15호, 최저연령(화물창 인 부(trimmer), 화부(火夫)) 1921	버마해운선적법
7	협약 16호, 청소년 건강 검진(해양), 1921	버마해운선적법
8	협약 17호, 근로자 보상(사고), 1925	근로자보상법 1923
9	협약 18호, 근로자 보상(업무상 질병), 1925	근로자보상법 1923
10	협약 19호, 평등한 대우(사고 보상), 1925	근로자보상법 1923

	ILO 협약	시행 중인 법령
11	협약 21호, 이민자 감독, 1926	버마이민법 1922
12	협약 22호, 선원 고용 계약서, 1926	버마해운선적법
13	협약 26호, 최저임금(기계 수리), 1928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일반) 고 정법 초안
14	협약 27호, 무게 표시(선박 수송 화물), 1929	량군항만법 1905의 규정에 따 라 제정된 관련 법률들
15	협약 29호, 강제 노동, 1930	헌법 규정에 반영
16	협약 42호, 근로자 보상(업무상 질병)(개정), 1934	근로자 보상법 1923
17	협약 52호, 유급 휴가, 1936	휴직 및 휴가 법 1951
18	협약 63호, 임금 및 근로 시간 통계, 1939	고용통계법 1948
19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 결권 보호, 1948	노조법 1926

부록 II

영구적인 부분 노동불능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부상 목록

부상	노동불능 정도(%)
팔꿈치, 또는 그 위쪽으로 오른팔 상실	70
팔꿈치, 또는 그 위쪽으로 왼팔 상실	60
팔꿈치 아래로 오른팔 상실	60
팔꿈치 아래로 왼팔 상실	60
무릎, 또는 그 위쪽으로 다리 상실	50
무릎 아래로 다리 상실	50
영구적인 완전 청각 상실	50
한 쪽 눈 상실	30
엄지손가락 상실	25
한쪽 발의 모든 발가락 상실	20
* 엄지 손가락 뼈(指骨) 하나 상실	15
* 검지 손가락 상실	15
엄지 발가락 상실	10
검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상실	5

주: 이 표에 명시된 사지 또는 기관 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사지 또는 기관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부록 III

업무상 질병 목록(A)

업무상 질병	관련 업무
탄저병	양모, 털, 강모(剛毛), 동물 사체, 동물 사체의 일부의 취급, 선적, 하역, 운송, 기타 탄저균에 감염된 동물과 관련된 모든 업무
납 중독 또는 그 후유증	납 또는 그 조제, 화합물이 사용되는 모든 공정
수은 중독 또는 그 후유증	수은 또는 그 조제, 화합물이 사용되는 모든 공정
인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중독 및 그 후유증	인 또는 그 화합물의 생산, 유리(遊離), 사용과 관련된 모든 공정
벤젠 또는 그 동족체, 니트로 유도체, 아미도 유도체에 의한 중독 및 그 후유증	니트로벤젠, 아미도벤젠, 또는 그 동족체의 취급, 제조, 사용과 관련된 모든 공정
질소 가스 중독 또는 그 후유증	질소 가스와 관련된 모든 공정
아세테이트 셀룰로스 용매로 사용되는 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 후유증	아세테이트 셀룰로스 용매로 사용되는 물질과 관련된 모든 공정
이황화탄소 중독 또는 그 후유증	이황화탄소 또는 그 조제, 화합물이 사용되는 모든 공정
니켈카보닐 중독 또는 그 후유증	니켈카보닐 가스와 관련된 모든 공정
타르, 피치, 역청, 파라핀 및 이 물질들의 화합물, 사용된 제품 또는 잔유물로 인해 발생한 상피종 또는 궤양	타르, 피치, 역청, 파라핀 및 이 물질들의 화합물, 사용된 제품 또는 잔유물의 취급 또는 사용과 관련된 모든 공정

타르, 피치, 역청, 파라핀 및 이 물질들의 화합물, 사용된 제품 또는 잔유물로 인해 발생한 각막궤양	타르, 피치, 역청, 파라핀 및 이 물질들의 화합물, 사용된 제품 또는 잔유물의 취급 또는 사용과 관련된 모든 공정
크롬 궤양 또는 그 후유증	크롬산, 중크롬산암모늄, 중크롬산포타슘, 중크롬산나트륨 또는 그 화합물 사용과 관련된 모든 공정
압축공기 질환(감압병)	압축공기를 사용한 모든 작업
유리 제조 근로자의 백내장	눈부심이나 녹은 유리에 노출된 채로 이뤄지는 모든 유리 제조 공정
액체 또는 고열 금속에서 나온 빛으로 인한 백내장	철, 강철의 제조, 재가열, 압연 작업 등 액체 또는 고열 금속에 수시로 노출되는 모든 공정
손 봉와직염	광산
팔꿈치 봉와직염 또는 급성 점액낭염	광산
손목관절 건막염 및 건초염	광산
비저균	비저균에 감염된 말을 돌보거나 그 시체를 취급하는 업무
전신기사 근육통(역주: 손목 터널 증후군의 19세기 식 표현)	전신 장비 사용
규폐증(폐결핵이 원인인지 여부와 무관. 규폐증이 후유 장애나 사망의 중요한 원인일 경우)	규폐증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버마 법령에 규정된 산업 또는 공정
지방족 탄화수소의 할로젠 유도체 중독	버마 법령에 지정된 지방족 탄화수소의 할로젠 유도체의 생산, 유리(遊離), 사용과 관련된 모든 공정

목록 (B)

분진 또는 액체로 인한 피부염

분진 또는 액체로 인한 피부 궤양

분진으로 인한 귀 또는 코 점막궤양

면사나 방모사(紡毛絲)(소모사(梳毛絲) 포함)를 꼬는 작업으로 인해 생긴 근육통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병리학적 현상

(a) 라듐 및 기타 방사성 물질

(b) 엑스레이